

信用保證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信用保證基金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001년 4월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금 상환업무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1월11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법률 제8235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부과·징수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를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호적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대상 제외주택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의 신고(법 제8조제3항 신설)

-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부과징수기간 전인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하도록 함.
-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 변경(법 제16조)

- (1) 재산세는 기초 과세자료인 부동산대장을 정부가 보유하는 대장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징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2)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를 허용함.
- (3)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호적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공(법 제21조제6항 신설)

- (1)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정부에서 고지서 발부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한 호적자료가 필요함.
- (2) 과세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에 필요한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